

SEED International 선교사 매뉴얼

1. SEED 선교회 개관	p.2	5. 사역정책	p.20
1.1 SEED 선교회 정신		5.1 본부사역	
1.2 SEED 선교회 핵심가치		5.2 사역의 전략	
1.3 SEED 선교회 목표		5.3 사역의 종류	
1.4 SEED 선교회 역사		5.4 사역의 평가	
		5.5 사역의 이양과 철수	
2. SEED 선교회 조직	p.4	5.6 현지 재산 관리	
2.1 국제대표		5.7 사역의 전략적 확장	
2.2 사무총장		5.8 교회	
2.3 국제사역위원회			
2.4 지역장		6. 복지정책	p.22
2.5 임명 및 임기		6.1 의료 보험	
3. 인사정책	p.6	6.2 은퇴 연금	
3.1 선교사 개요		6.3 생명보험	
3.2 선교사 구분		6.4 긴급 구호기금	
3.3 선교사 허입과정		6.5 국제 상호기금	
3.4 선교사 훈련		6.6 선교사 자녀 장학금	
3.5 변경 절차		6.7 Guest House	
3.6 사역지에서의 삶		6.8 안식년 숙소	
3.7 선교행정 및 재정보고 체계		6.9 선교사 은퇴마을	
4. 재정정책	p.16	7. 서약서	p.23
4.1 회계년도			
4.2 선교비 모금			
4.3 선교비 입금절차			
4.4 선교비 지출절차			
4.5 기타 후원금 모금			
4.6 각국 본부의 책무			
4.7 송금절차			
4.8 사역비 보고 및 청구			
4.9 재정감사			

1. SEED 선교회 개관

SEED 선교회의 모체는 1990년 10월에 창립한 와싱턴중앙장로교회의 Central Missionary Fellowship (CMF)와 1993년에 창립한 뉴욕장로교회의 Reach Out to the World (ROW)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2000년 6월 교회 중심의 두 선교기관인 CMF와 ROW의 통합으로 SEED 선교회는 탄생했다.

창립시부터 SEED 선교회는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와 ‘선교회는 교회를 돕습니다’라는 두 슬로건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약속하시고 남기신 기관이 교회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교회가 본래의 목적인 선교 지향적인 교회(Mission Oriented Church)가 될 때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확신한다. 그리고 선교회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지역교회가 양육하여 파송한 선교사들을 사역적으로 훈련시키고, 또한 선교지에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동역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SEED 선교회는 지역교회를 섬겨(Serving the Local Church), 선교사를 훈련하며(Equipping Missionary), 선교지에 교회를 설립하여 세계복음화(Evangelizing Nations)를 완수하고, 현지지도자를 양성(Disciplining National Workers)하여 마지막 과업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6월 현재, SEED USA (2000년 창립), SEED Korea (2001년 창립), SEED Canada (2006년 창립) 및 SEED Brazil (2010년 창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7개국에 141가정의 264명이 사역을 하고 있다.

1.1 SEED 선교회 정신

-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 ‘선교회는 교회를 돕습니다’

1.2 SEED 선교회 핵심가치

- Church Based Missions (교회중심)
- Christ-like Characters (그리스도의 성품)
- Prayer Ministry (사역적인 기도)
- Personal Discipling (제자양육)
- Partnership (상호협력)

1.3 SEED 선교회 목표

1. Serving the Local Church: 지역교회를 섬깁니다.

SEED는 지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섬깁니다. 1997년 CMF에서부터 해마다 열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담당자를 위한 ‘선교 지도자 세미나’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선교정책의 중요성과 선교사 파송이라는 교회가 해야 하는 선교사역에 눈을 뜨게 되어 SEED와 함께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2. Equipping Missionary: 선교의 일군을 키웁니다.

SEED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섬기는 선교사를 양성합니다. 선교사의 영성과 사역의 열매에 따라 교회는 계속 선교의 일군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확증시켜 주는 것도 선교사의 인격과 삶입니다. 그러므로 SEED의 가장 중요한 선교전략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본받아 섬기는 선교사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3. Evangelizing Nations: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합니다.

SEED는 미전도, 미교회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문화에 맞는 토착교회를 세웁니다. 선교사님들의 다양한 부르심과 은사에 따른 모든 종류의 사역의 한가지 목적은 현지인들에 의하여 재생산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4. Discipling National Leaders: 현지인 지도자를 키웁니다.

SEED는 현지 교회가 스스로 서서 자기 민족뿐 아니라,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자라도록 주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제자훈련에서 신학교 사역에 이르기까지, 지도자 양성을 통하여 현지 교회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SEED사역의 최종 목표입니다.

1.4 SEED 선교회 역사

- 1990.10. CMF 미국 버지니아 주정부에 등록하다.
- 1993.1. ROW 조직하다.
- 2000.6. SEED International 창립하다.
- 2000.9. EFMA(현 Missio Nexus)에 가입하다.
- 2002.4. SEED Korea 설립되다.
- 2006.3. SEED Canada 캐나다 정부에 등록하다.
- 2007.5. SEED WAVE 창립하다.
- 2007. ICTC 설립하다.
- 2008. RCMWH 조직하다.
- 2009.10. SEED USA 조직하다.
- 2009.10. SEED 국제본부 설립하다.
- 2010. SEED Brazil 발족하다.
- 2011. IBN 설립하다.
- 2012. SBN 조직하다.
- 2013. PRASSION 창립하다.
- 2015. 12. 5 설립자 이원상 목사 소천.

2. SEED 선교회 조직 - 국제본부 (International Office, IO) (정관에서 발체)

2.1 국제대표 (President)

- 2.1.1 국제이사회는 본 선교회의 설립이념과 목적에 따라 해외사역을 전개해 나갈 국제대표를 선출하여 국제본부의 모든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한다.
- 2.1.2 국제대표는 본 선교회를 대표하여 국제본부의 직원 및 행정선교사의 인사 및 사역을 관장하며, 국제본부 운영의 책임을 진다.
- 2.1.3 국제대표는 국제사역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모임을 주관한다.
- 2.1.4 국제대표의 선임과 해임은 제6조 제2항의 결의규정에 의한다.

2.2 사무총장 (Executive Director)

- 2.2.1 사무총장은 국제대표가 국제본부 사역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보필한다.
- 2.2.2 국제사역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해외 선교사들의 사역을 관장한다.
- 2.2.3 사무총장의 선임과 해임은 제6조 제2항의 결의규정에 의한다.

2.3 국제사역위원회 (International Ministry Committee, IMC)

- 2.3.1 선교사들의 상호협력과 사역조정을 위하여 국제사역위원회를 구성한다.
- 2.3.2 국제사역위원회는 국제대표, 사무총장, 선교지 권역별로 위임된 지역장, 각 국가 SEED 선교회의 대표(및 부대표 혹은 총무 1인) 및 SEED 국제선교회 산하 기관장으로 구성한다.
- 2.3.3 국제사역위원회는 선교사의 안전, 사역, 여행, 자녀교육, 은퇴 등을 관장하며, 선교현장의 협력과 효율적인 사역을 위한 전략개발, 사업승인,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2.3.4 선교사 회원의 최종 인사권은 선교사가 소속된 각 국가의 SEED 선교회가 갖되 모든 인사결정은 국제사역위원회 (지역장/사무총장/국제대표)의 동의를 거쳐 각 국가에서 최종 결재한다.
- 2.3.5 국제사역위원회는 선교사의 회원권 (정회원, 준회원, 협력회원)을 규정할 수 있으며, 권역별/국가별 선교사회를 조직하여 현장의 선교사역을 지도 및 감독한다. 본 위원회는 선교사의 개별 혹은 팀 사역을 평가하여 각 국가의 SEED 선교회 본부에 제출하여 사역을 조정할 수 있다.
- 2.3.6 국제사역위원회는 년 1회 정기모임을 가지며, 국제대표의 소집 혹은 국제사역위원 1/3의 발의로 임시모임을 가질 수 있다.
- 2.3.7 국제사역위원회는 국제 SEED 선교사 대회 6개월 전에 향후 4년간의 선교회의 비전과 목표, 선교회 발전방향, 선교현장의 사역전략 등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제대표를 통하여 국제이사회에 보고한다.
- 2.3.8 국제사역위원회는 매 4년 국제 SEED 선교회 선교사 대회를 기획 및 진행하며, 선교사 대회 중간에 2년마다 각 권역별 선교사 수련회를 진행한다.
- 2.3.9 국제사역위원회는 지역장 중 2인과 현장 선교사 중 (10년 이상 된 선교사) 2인을 추대하여 국제이사회 선교사 이사로 추천한다. 선교사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역장 대표와 선임선교사 대표의 연차를 조정하여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2.4 지역장 (Regional Director)

- 2.4.1 지역장은 10년 이상의 사역을 감당한 선임선교사 중 국제대표가 지명한다. 지명된 선교사는 보직서리(acting)로 직무를 담당하되 국제이사회(혹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임명한다.
- 2.4.2 지역장은 거주 국가 및 인접국가의 선교사 20~30 유닛을 기준으로 섬기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현직 선교사를 선임한다.
- 2.4.3 지역장은 해당 지역 선교사들의 현장복무와 안전을 관리하며, 선교지 출입국 관련업무(여행), 각종 사역 및 개인상담, 선교사 간의 분쟁조정 및 위기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을 담당한다.
- 2.4.4 지역장은 지역 선교 전략을 위하여 전략자문기구를 둔다. 전략자문위원회는 국제본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 2.4.5 지역장은 관할 지역내에 필요한 경우 국가장을 둘 수 있다. 국가장은 세 유닛 이상의 선교사가 사역하는 국가에서 4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 중에 지역장이 지명하여 국제본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2.5 임명 및 임기

- 2.5.1 국제대표와 사무총장은 국제이사회에서 각 4년간의 임기로 연차를 두어 임명하며 국제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연임할 수 있다.
- 2.5.2 지역장과 국제본부 산하기구의 담당자는 국제대표가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지역장과 산하기관의 디렉터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5.3 국제본부 직원의 채용과 해직은 국제대표가 최종 결재하되 국제이사회에 보고한다.

3. SEED 선교회 인사정책

3.1 선교사 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타문화권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파송된 자로서 SEED 선교회가 정한 선교사 훈련과정을 거쳐 선교 현지로 정식으로 임명받은 선교사를 말한다. 선교사는 각자의 소명과 선교회의 규정에 따라 선교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3.1.1 SEED 선교회는 지도력을 세움에 있어서 다음의 가치를 존중한다.

- 부르심
- 바른 신학
- 비전을 함께 더불어 하나되게 사역
- 직책에 대한 사명과 책임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 리더십 과정을 수료한 사람

3.2 선교사 구분

3.2.1 (전회원과 준회원) SEED 선교사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 선교사: 장기선교사, 본부행정선교사
- 준회원 선교사: 단기선교사, 동역/협력 선교사

3.2.2 선교사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장기선교사: 4년 이상 헌신하여 선교회의 규정에 따라 허입절차를 거친 후 선교회가 정한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선교지에 파송된 자
- 2) 단기선교사(2년 이상 4년 미만): 은사나 재능을 따라 일정 기간 장기선교사를 지원하는 자
- 3) 전문인 선교사: 실버, MK 선교사 등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역을 하는 자
- 4) 동역/협력선교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전문적인 분야(컴퓨터, 건축, 상담, 자녀교육 지원 등)로 선교사를 지원하는 자
- 5) 은퇴선교사: 본 선교회 선교사로 규정에 따라 은퇴한 자
- 6) 광역적 멤버 케어 선교사 (Missionary at Large): 선교지의 오랜 경험과 본부 리더십을 거친 시니어선교사가 멤버들을 멘토링하는 선교사

3.2.3 (기간별 구분) 선교사는 사역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선교사 후보/Missionary Candidate: 이사회 허입 인준을 받은 선교사
- 2) 견습선교사/Intern Missionary: 이사회 허입후 파송을 받아 선교지에 도착하기 전 선교사
- 3) 신입 선교사/Junior Missionary: 선교지에서 두팀 미만을 사역한 선교사
- 4) 선임 선교사/Senior Missionary: 선교지에서 두팀 이상을 사역한 선교사

3.3 선교사 허입과정

3.3.1 선교사 후보(Missionary Candidate)는 전향에서 명시한 대로 허입과정에 있는 자로 이사회의 허입 인준을 받고 선교지 부임 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허입과정은 SEED 선교회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선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훈련 과정을 마치고 SEED 선교사가 되는 과정을 말한다.

2) 허입 기준

- ① 거듭난 성도로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사는 자
- ② 선교사로 부르심의 확실한 소명을 가진 자
- ③ 선교사 사역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자 (신학, 일반 전문 교육)
- ④ 소속 교회에서 인정받은 자
- ⑤ 인격적, 정신적, 육체적 강건한 자
- ⑥ 선교회가 요청/인정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SEED Orientation, ICMS)
- ⑦ 선교회 규정 준수 서약하는 자

3.3.2 절차 (선교사 후보)

1) 1차 면접은 각 국가본부 대표가 담당한다.

2) 면접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결혼한 후보의 경우는 부부가 별도로 작성한다.

- ① 허입원서(본부 양식)
- ② 이력서
- ③ 신앙간증서
- ④ 건강진단서
- ⑤ 최종학교 증명서
- ⑥ 미혼의 경우 부모의 선교사 수락서 (본부 양식)
- ⑦ 담임목사 추천서 (필수)와 기타 2인의 추천서 (본부 양식)
- ⑧ SEED 소속 선교사의 추천시에는 해당 추천자의 추천서를 제출한다. (본부 양식)

3) 1차 면접을 마친 후 선교회가 추천한 기관에서 발행한 성격 유형 및 인성진단 검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4) 2차 면접

- ① 2차 면접은 국가대표 혹은 사무총장 및 해당 국가 이사 1인과 면접한다. 면접을 마친 후에는 면접평가서 (본부 양식) 를 인사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② 2차 면접 후 선교사 후보는 수습선교사로 선교사 훈련 및 모금을 할 수 있다.
- ③ 수습 선교사는 SEED orientation 과 ICMS 훈련을 마치고 훈련평가서 (본부 양식)를 첨부하여 이사회에서 허입을 인준받는다.
- ④ 수습선교사는 해당 국가 이사회의 허입 인준 전까지 파송교회를 확정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본부 대표, 사무총장과 해당 이사회에서 의논하여 처리한다.

3.3.3 경력 선교사의 허입 절차 및 기준

- 1) 경력선교사는 타 선교단체 혹은 개 교회 파송으로 선교지에서 사역하던 혹은 사역중인 선교사로 SEED 선교회로 허입을 원하는 자를 말한다. (본부 양식)
 - ① 사역지에서 철수하여 귀국한 경력선교사는 후보자와 동일한 절차와 허입 기준에 따른다.
 - ② 현재 사역지에서 사역 중인 경력선교사는 지역장의 면담과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후 해당 국가 본부가 필요한 허입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③ 해당 국가 본부가 필요시 전 소속 선교회와 파송 교회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 ④ 경력선교사는 반드시 ICMS 훈련을 마치고 해당 국가 본부 이사회의 허입 결정이 된 후 회원이 된다.
 - ⑤ 회원이 된 후 2년 간은 준회원 선교사이며 3년차부터 정회원 선교사가 된다.

3.4 선교사 훈련

3.4.1 훈련과정

- 1) Orientation
- 2) ICMS
- 3) 국제본부 및 각 국가 본부에서 Internship 사역

3.4.2 훈련평가

- 1) 모든 훈련을 마친 후 해당 훈련기관 책임자가 훈련평가서(본부 양식)를 작성하여 필요기관에 제출한다.
- 2) 훈련 평가서는 겸손, 인내, 적응성, 창의성, 협력 및 선교사 허입 기준에 따른 변화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3.5 변경 절차 (파송, 배치 및 이동, 사역지 변경 및 사역국가 변경에 대한 절차)

3.5.1 선교사 파송

- 1) 장기 선교사 선교지 결정: 선교회의 정책 및 본인의 소명에 따라 ICMS 마지막 주 국제사역위원회의 모임에서 지역장, 해당 국가대표와 사무총장과의 면담으로 결정하여 국제 이사회에 보고한다.
- 2) 단기선교사는 해당 국가 본부에서 임명과 파송을 한다.

3.5.2 파송 심사

- 1) 해당 국가 대표와 국가 이사장의 심사를 거쳐 국제본부에 심사결과를 제출한다.
 - ① 모든 행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
 - 선교사 프로파일
 - 사역국가 및 지역 연구를 통한 사역비전
 - 언어훈련 계획
 - ② 각 국가 재정부에서 국가별, 지역별, 사역별, 가정별로 환산된 생활비 및 사역비의 80%의 현금 약정서 (본부 양식)를 확인하여야 한다.

3.5.3 파송 예배

- 1) 파송 예배는 파송교회에서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각 국가 본부에서는 파송증, 선교사 임명장을 수여하며, 서약서, 공증된 유언서를 제출받는다. (본부 표준 양식) 파송순서 (본부 표준 양식)
- 3) 모든 문서의 원본은 국가 본부에 보관하고, 필요시 복사본을 사용한다.

3.5.4 출국

- 1) 사역지 도착 날짜가 사역 임기 시작이다.
- 2) 출국 절차는 각 국가 행정팀 관할한다.
- 3) 사역지 입국 후 1개월 이내로 지역장에서 입국 보고를 하면서 파송증 복사본을 제출한다.

3.5.5 언어훈련

- 1) 2년의 언어 훈련을 한다.
- 2) 1년 동안에는 실생활 언어와 2년차에는 사역언어에 집중한다.
- 3) 언어 평가는 지역장(국가장)이 1년마다 하며, 현지 국가에서 실행하는 언어시험의 중급 이상을 통과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3.6 사역지에서의 삶

3.6.1 선교사의 임기: 선교사의 임기는 한 팀을 6년으로 하며, 안식년 1년을 포함한다.

3.6.2 선교사의 권리와 의무

- 1) 청원 사항과 정책을 지역장, 해당 국가본부와 국제본부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2) 선교사역 보고는 3개월 마다 교회와 국가본부 및 국제 본부에 보고한다. (본부 양식)
- 3) 재정보고는 매월 해당 국가 본부에서 정한 날짜에 한다.
- 4) 기도책자를 위한 기도제목을 각 국가행정팀과 국제본부에 분기별로 보고한다.
www.seedtoday.org
- 5) 매년 회계년도 말(9월말)에 연간 보고서(본부 양식)를 작성하여 지역장, 해당 국가 본부와 국제본부에 제출한다.
- 6) 한 팀 보고서를 안식년 시작 6개월 전에 지역장, 해당 국가본부와 국제본부에 제출한다. (본부 양식)
- 7) 가정 및 건강 문제 등으로 사역의 지장이 있을 경우 지역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 본부와 국제 본부에 보고한다.
- 8) 선교사는 지역별/국가별 활동과 전체 활동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의무가 있다.

3.6.3 사역지 변경 및 이동

- 1) 권역별 내 사역지 변경: 선교사가 사역지를 변경할 경우 먼저 지역장에게 요청하고 지역장은 해당 국가대표와 국제본부 사무총장과 협의하며, 해당 국가본부 대표는 지역장과 면담한 후에 파송 교회와 협의하여 최종 승인을 한다.
- 2) 권역별외 사역지 변경: 선교사가 다른 권역별 사역지로 변경할 경우 먼저 지역장에게 요청하고 지역장은 해당 국가본부 대표와 국제본부 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사무총장은 다른 권역의 지역장과 협의를 한 후에 해당 국가 대표가 선교사 파송 교회와의 협의를

마친 후 국제대표가 최종 승인을 한다.

3.6.4 사역을 위한 출장 및 사역지 이탈

- 1) 출장 및 기타 사유로 일주일 이상 선교지를 이탈할 경우 지역장/국가장에게 보고한다.
- 2) 해외 여행의 경우는 지역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본부 대표의 서면 허락을 받고 출국하여야 한다.
- 3) 지역장은 선교사의 해당 파송 국가 본부에 선교사의 이동 사항에 대하여 연락하여 연락하여 선교사의 행적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보안지역에서는 안전을 고려하여 선교사가 선조치 후보고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 5) 방문비자를 위한 사역지를 떠나 타국으로 이동시에는 1주 이상 머무를 수 없으며, 비자 갱신을 위한 여행의 경우 2주 이내로 타국에 머물며 처리한다.
- 6) 파송 국가 대표 및 행정부에서는 파송 교회에 출장 및 사역지 이탈에 대한 보고하여야 한다.

3.6.5 휴가 및 병가

- 1) 휴가는 1년에 4주로 한다. 2주는 사역을 위한 휴가로 타선교지 방문 및 세미나 참석, 연구월(Study Leave)등으로 할 수 있다. 또한 2주는 가족을 위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계획서를 지역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 본부에 제출한다.
- 2) 만약 본국 입국의 경우는 지역장과 해당 국가 본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휴가를 포함한 본국 체류는 최대 4주 (가족 휴가 2주, 사역 휴가 2주)를 초과할 수 없다.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기간이 초과할 경우 해당 국가대표의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 3) 병가는 건강상 이유로 치료를 목적으로 선교지를 비우는 경우로 지역장에게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장은 해당 국가 본부 대표에게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병가는 1년 4주 휴가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강검진 등은 병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3.6.6 안식년/본국 사역

- 1) 선교사는 5년의 사역을 마친 후 영적 재충전, 파송교회와 후원자들과의 교제 및 다음 사역준비를 위하여 안식년을 가진다. 이를 본국 사역이라 칭한다.
- 2) 기간은 1년 원칙으로 하며, 자녀들의 학업을 위하여 방학을 이용한 안식월로 대치 가능하다. 그리고 사역현장을 비울 수 없는 경우 안식월로 할 수 있다.
- 3) 1년 미만의 안식 기간을 가진 후 남은 기간은 다음 안식년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4) 안식년 기간 동안에는 해당 국가 본부의 관할에 속하게 되며, 사역활동 및 재정 보고는 국가 본부에 한다.
- 5) 해당 국가 본부는 선교사 주택 마련 등 안식년 준비를 협력한다.
- 6) 안식년 준비 절차는 시작 전 6개월 전 안식년 계획서를 지역장과 해당 국가 본부에 제출한다. 사역 준비를 위하여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전에 사역계획서 및 초과 이유서를 지역장에게 보고하고 지역장은 국가대표 와 사무총장과 협의한 후에 국제대표의 허락을 받는다.
- 7) 안식년이 시작되면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한 후 해당 국가 본부를 방문하여 면담보고(사역평가서)와 본국 사역일정을 협의한다.
- 8) 해당 국가 본부와 디브리핑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영적 안식의 기간을 가지며, 건강 검진 및 필요시 심리 상담을 받는다.

- 9) 안식년 동안 해당 국가 본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능하면 1-2개월 본부 사역에 동참한다.
- 10) 해당 국가 본부에서는 재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다음 사역을 준비하도록 한다.
- 11) 해당 국가 본부에서는 파송교회와 협의하여 재파송 절차를 세우도록 한다.
- 12) 안식년 중에 선교사가 해외로 나가야 할 경우에는 행선지와 기간 등을 해당 국가 본부에 알린다.

3.6.7 은퇴

- 1) 선교사의 정년과 은퇴는 70세를 원칙으로 한다.
- 2) 선교사 리더십은 65세까지로 하며 국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 3) 은퇴시에 SEED 선교사 사역 20년이 경과한 선교사에게는 명예회원으로 추대한다.
- 4) 은퇴 후에 현지에서 사역하기를 원할 경우, 검진결과서와 파송교회 파송증명서 (파송에 준하는 후원금액), 사역 평가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역장의 추천과 국가대표와 사무총장이 협의하여 국제대표의 승인을 받은 후 허락할 수 있다. 최대 75세까지 한다. 이러한 특수 선교사역을 하는 선교사를 골드선교사로 추대한다.
- 5) 은퇴 후의 복지
 - ① 본부에서는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주택 및 생활을 위한 기본 지원을 위하여 파송교회와 후원 교회와 함께 복지 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② 선교사 은퇴 마을(Missionary Village)을 준비하여 SEED 소속으로 20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들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한 시행세칙으로 시행한다.
 - ③ 은퇴 준비를 위하여 선교사 파송 후 준비기금을 본부와 함께 마련한다.
- 6) 은퇴 후의 사역
 - ④ 은퇴 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선교본부 행정, 동원, 선교사 훈련 사역으로 섬긴다. 해당 국가 본부 사역일 경우에는 해당국 이사회, 국제본부 사역일 경우에는 국제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세계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힘의 한도내에서 사역한다.

3.6.8 휴직, 사임

- 1)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휴직 및 사임할 수 있다.
 - ① 휴직: 사고나 질병으로 휴직이 필요한 경우 지역장에게 요청하며, 지역장은 해당 국가 대표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허락한다. 휴직의 경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할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② 사임: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지역장과 해당 국가본부 대표에게 사임서를 제출하며 국가대표는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국제대표가 허락하며, 국가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임을 종결한다.
- 2) 재정 절차
 - ① 휴직: 정상적으로 선교사 생활비를 지불한다.
 - ② 사임: 사임 선교사의 재정 상황에 따라 3개월 생활비 지불한다. 남은 현금 및 선교 재산은 선교회 귀속한다.

3.6.9 징계, 제명, 면직

- 1) 징계사유: 사역지 무단 이탈, 합법한 지시 불이행, 부도덕한 성행위, 음주와 흡연, 신조 위반, 선교를 빙자한 사업,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할 수 있다.
- 2) 절차: 지역장의 보고로 징계사유가 인정이 될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고 해당 국가 이사회에 보고한다. 인사위원회는 국제대표, 사무총장, 국가 대표 및 해당 지역장으로 구성한다.
- 3) 선교사는 모든 징계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진다.
- 4) 징계에는 경고, 근신, 직무 정지, 면직 및 제명이 있다.
 - ① 경고는 징계사유 상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 ② 근신은 가벼운 징계사유 발생시 1개월 동안 사역을 중지하고 회개와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 ③ 직무 정지는 현지에서 선교사로서의 모든 사역을 6개월 정지하고, 인사위원회와의 면담을 가진다.
 - ④ 면직 및 제명은 심각한 징계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인사위원회가 면직 혹은 제명의 과정을 진행한다.
- 5) 징계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부적절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상호 인정하며 이러한 일들에 회개 및 회복하여 선교사의 직분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6.10 결혼, 이혼, 별거

- 1) 미혼 선교사가 사역 중에 결혼하는 경우 해당 국가 본부 대표에게 보고한다.
- 2) 배우자는 본회의 멤버십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진다. 부득이할 상황이 발생시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한다.
- 3) 해당 국가 본부에서는 배우자의 선교사 소명을 확인한 후 선교훈련 등의 허입 절차 및 파송 절차를 결정한 후 진행한다.
- 4) 별거는 SEED 선교사로서의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역장을 통하여 인사위원회에 보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선교사 가정은 사역의 현장에서 강한 사탄의 공격이 예상이 되므로 가정 상담 등을 통하여 선교사 가정을 보호하여야 한다.
- 5) 별거를 할 경우 6개월 미만의 직무정지를 통하여 결혼 생활 회복 절차를 받도록 한다.
- 6) 선교사 가정이 이혼을 할 경우 권고 사임케 한다. 불응시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3.6.11 선교사 자녀 (MK) 정책

- 1) 자녀 교육은 선교사역보다 우선할 수 없다.
- 2) 자녀 교육에 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그 부모가 진다. 그러나 선교회는 자녀들의 효과적인 교육과 정체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3) 선교사 자녀들은 자국민,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차세대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와 선교회는 지도한다.
- 4) 각 국가 본부는 자녀들의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학업을 돕도록 한다.
- 5) 오지에서 홈스쿨을 하여야 할 경우 국제 본부와 국가 본부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며, 선교사 자녀를 위한 MK 교사를 파송하도록 한다.

6) MK 교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방문교사: 일시 방문으로 자비 부담이며 숙식은 해당 선교사가 제공한다.
- ② 단기교사: 1년 이하로 선교사 지위가 없지만 여행경비 및 생활비는 후원을 받으며 숙식은 해당 선교사가 제공한다.
- ③ 단기교사 선교사: 선교사 지위로 교사 경험 및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기선교사와 같이 전액 후원이 필요하며 해당 선교본부에서 재정 관리를 한다.
- ④ 장기교사 선교사: 정회원 선교사로 의무와 권리가 동일하다.

3.6.12 위기상황

- 1) 선교사는 현장에서 납치, 테러, 및 순교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몸값(Ransom)을 흥정하지 않으며, 기도 Network를 통하여 기도를 요청하며 선교사 해당 정부기관을 통하여 외교적인 절차를 통하여 구출하며, 정부와 협력하여 언론사에 알려 구출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모색한다.
- 2) 상황실 구성: 현장의 지역장, 국제대표와 사무총장, 해당 국가 대표 및 파송 교회 당회장과 위기관리 부서 책임자들로 구성된 상황실을 운영한다.
- 3) 지역장은 선교지 내의 정치적 불안, 소요, 무정부 상태를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하도록 한다.
- 4) 각 국가 본부에서는 타 기관 및 위기관리 부서와 정보 공유 및 대책 수립을 마련한다.
- 5) 전쟁, 재난 등의 위기 상황에서 철수 등을 지휘는 국제본부에 두며 국가 본부 대표와 사무총장과 국제대표가 결정하여 송환 및 철수를 결정하고 모든 절차에 책임을 진다. 송환 및 철수에 따른 재정은 각국 별로 Emergency Fund를 운용한다.

3.6.13 유연장

- 1) 선교사는 파송 전에 유연장을 제출한다.
- 2) 위기 상황 및 현장에서 순직을 대비하여 파송전에 양식에 따라 유연장을 제출한다. 유연장을 작성한 후 변호사 공증을 받아 가족, 국가대표 사무실, 국제대표 사무실에 비치하며 입국시에 지역장에게 제출할 복사본을 준비한다.
- 3) 유연장에는 장례절차, 유해 처리에 관한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재산 처리의 문제(선교 자산은 선교회에 귀속, 개인 재산 처리 문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부일 경우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3.7 선교회 행정 및 재정 보고 체계

3.7.1 행정 보고 체계

- 1) 선교사는 본 매뉴얼에서 명시한 행정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는 이메일, 스카이프, 카카오톡으로 한다. 주요 보고서는 매뉴얼에 명시된 본부 양식 서류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하고 pdf파일로 해당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 2) 선교사는 개 교회에 보내는 기도 편지를 지역장, 국가 본부 대표와 사무총장에게도 함께 보낸다.

3.7.2 사역보고

- 1) 분기별로 보고한다. (12, 3, 6, 9월)
- 2) 연간 보고(Yearly Report)는 매년 9월말까지 지역장과 국가 본부 대표와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며, 지역장과 국가 본부 대표는 지역과 국가 별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국가 본부 대표는 국가 이사회에 그리고 사무총장은 국제대표와 국제이사회에 보고한다.

- 3) 연간 보고(Yearly Report)는 당해 일년 사역보고 및 새해 사역 계획 포함한다.
- 4) 선교회는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이다.
- 5) 보고서 양식은 이메일로 수신: 지역장, 참조(cc): 국제대표, 사무총장, 국가 본부 대표로 하면 된다.

3.7.3 기도제목 보고

- 1) 매월 지역장에게 기도제목을 보고하여 지역내에서 동료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 2) 국제본부에서 발간되는 기도 책자에 필요한 기도제목은 매 3개월 마다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 3) 수신: seedintoffice@gmail.com, 참조: 지역장, 국가 대표, 사무총장

3.7.4 재정 보고

- 1) 매월 해당 국가 본부 재정부에 보고한다.
- 2) 필요시 지역장과 사무총장은 해당 국가 본부에 연락하여 열람할 수 있다.

3.7.5 이메일 연락처

- 1) 국제 본부
 - ① 국제대표: seedpresident@gmail.com
 - ② 사무총장: seedexecdirector@gmail.com
 - ③ 사무실: seedintoffice@gmail.com
 - ④ 기도제목: seedintoffice@gmail.com
- 2) SEED USA
 - ① 대표 office 이메일로
 - ② 행정부대표: seedwo@gmail.com
 - ③ 재정부대표: seedfinance@gmail.com
- 3) SEED Korea
 - ① 대표 sikobonsajang@gmail.com
 - ② 행정 sikobonsa1@gmail.com
 - ③ 재정 91kyb@naver.com
- 4) SEED Canada
 - ① 대표: office 이메일로
 - ② 행정/재정: admin.seedcanada@gmail.com
- 5) 지역장
 - ① 동북아1 (중국/북한): 왕위대
 - ② 동북아2 (일본/한국): 강민숙 (joshuaestherkang@gmail.com)
 - ③ 동서남 아시아: 김일관 (filwy21@hanmail.net)

- ④ CIS(구소련, 몽골): 송이센 (ishensong@gmail.com)
- ⑤ 중남미: 이동준 (rockfaith.lam@gmail.com)
- ⑥ 중동: 권강혁 (ankarahope@gmail.com)
- ⑦ 유럽 아프리카: 남사현 (malagamission@gmail.com)
- ⑧ 북미다민족: 송문규 (dgsong@hotmail.com)

3.7.6 웹페이지

- 1) 국제본부/USA: www.seedtoday.org
- 2) SEED Korea: www.seedkorea.net
- 3) SEED Canada: www.seedcanada.ca
- 4) 기도네트워크킹:

4. 재정 정책

모든 재정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Faith Mission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후원교회 또는 개인을 통하여 공급해 주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모든 재정은 선교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 재정을 다루는 본부직원이나 선교사들은 규정에 따라 정직성(Integrity)을 가지고 모든 재정을 다루어야 한다. 여기에서 Integrity라 함은 재정투명성, 재정사용의 효율성 그리고 단체 공신력을 최우선 목표로 함을 의미한다. 본 선교회 재정관리 대상은 본부 사무실 및 모든 회원 선교사와 선교사 후보의 모든 후원금이다.

4.1 회계년도: 각 국가의 회계년도는 다음과 같다.

- 4.1.1 국제본부: 매년 10월 1일부터 - 다음 해 9월 30일 까지
- 4.1.2 SEED USA: 매년 10월 1일부터 - 다음 해 9월 30일 까지
- 4.1.3 SEED Korea: 매년 11월 1일부터 - 다음 해 10월 30일 까지
- 4.1.4 SEED Canada

4.2 선교비 모금: 모든 선교사는 자신의 선교를 본인이 모금하되 각 국가 선교회에서 정한 기본 후원금 기준과 그 내역에 따라 선교사의 생활비를 책정하여 매월 지급한다. 또한 사역을 위한 사역비를 사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경우는 국가 대표와 국제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4.2.1 선교사 후원은 지정헌금과 비지정 헌금으로 나눈다.
- 4.2.2 선교사 기본생활비: 선교지 국가의 경제지표와 선교사 가정 형편에 맞게 각국 본부에서 책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기본 생활비에는 생활비, 주택비, 자녀 교육비 및 휴가비 등을 말한다.
 - 2) 사역비: 활동비, 기초사역비, 언어훈련비이다.
 - 3) 복지비: 은퇴적립금, 의료비, 안식년적립금이다.
 - 4) 정착금: 초기 정착비를 말하며, 차량구입비는 별도로 한다.
 - 5) 프로젝트비: 선교사나 선교팀의 특별사역비를 말한다.
 - 6) 교사 생활비에 대한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다. 다만 생활비를 제외한 사역비와 프로젝트에 대한 세무보고를 위하여 영수증 원본이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7) 사임하거나 해직될 경우 세법상 잔여 선교후원금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단체에 속한 것으로 단체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 타 선교단체로 사역을 옮기는 경우는 타 선교기관과 선교사와 협의하여 타 선교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 4.2.3 다음과 같이 선교사 기본생활비에 대한 예를 참고로 한다. 각 국가 재정부에서는 선교사 허입과 동시에 이에 대한 자료를 선교사에게 제공한다.
 - 1) 선교사의 기본생활비가 \$2,200.00일 경우 실제 모금액은 105% (한국), 107.5% (미국)이 되어야 한다.
 - 2) 자녀 교육비는 자녀 일인당 \$100.00을 추가 할 수 있다.
 - 3) 생활비(보급)은 매년 \$50.00을 인상할 수 있으며, 최고 누적액은 \$1,000불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 근속일 경우 실제 수령액은 \$3,200.00를 초과하지 못한다.

4.2.4 기본 생활비가 모자라는 선교사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각 국가본부별로 자발적인 현금으로 공동체 기금을 마련하여 일정 기간, 일정 한도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 2) 지원절차로는 지역장이 추천하여 해당 국가 본부 대표와 사무총장이 그 지원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4.2.5 각 국 본부로 송금되는 모든 선교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행정비를 공제한다.

- 1) 행정비는 단체 운영과 국제본부 사역, 선교사대회, 교육과 훈련, 동원과 홍보 및 선교사 케어를 위하여 사용된다.
- 2) 각 국가 별 행정비 공제는 각 국가에서 정하며 다음과 같다.
 - ① SEED USA: 7.5%
 - ② SEED Korea: 5%
 - ③ SEED Canada:
 - ④ SEED Korea는 한국 본부와 국제본부의 승인절차를 받은 일회성 프로젝트는 행정비를 공제하지 않으며, 자녀들의 장학금과 초기 부임 항공료의 경우 파송 교회가 지원할 경우는 공제하지 않는다.

4.2.6 선교사는 교회나 개인에게 받는 후원금과 설교 및 강의에 대한 사례비는 선교후원금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각 국가 본부는 이에 대한 영수증과 세금 공제용 영수증을 발행하여 재정 투명성과 단체 공신력을 세우도록 한다.

4.3 선교비 입금 절차

4.3.1 SEED USA (현재 공란)

4.3.2 SEED Korea

- 1) 선교사의 선교현금 통장(국민은행)을 본부에 관리하고 전액(봉급과 사역비 구분없이) 송금한다.
- 2) 해외 송금을 할 경우는 행정비 5%를 제외한 금액을 해외로 송금한다.
- 3) 모든 선교현금은 SEED Korea 대표 계좌에 속한 가상 계좌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송금한다.
- 4) SEED USA와 SEED Canada로 입금되는 후원금은 SEED USA/Canada에서 매월 SEED Korea로 송금이 되며 영수증과 세금 면제에 대한 서류는 SEED USA에서 관리한다. 이에 대한 행정비는 SEED USA에서 ()%, SEED Korea에서 ()%를 공제한다.
 - ① (USA) Payable to SEED USA로 표기하고 memo에 홍길동 선교사 후원금(혹은 post-it)이라고 기입하여 SEED USA, 14545 Valley View #A, Santa Fe Springs, CA 90670로 보낸다.
 - ② (CANADA) Payable to SEED Canada 표기하고 memo에 홍길동 선교사 후원금(혹은 post-it)이라고 기입하여 SEED Canada, 12969 Crescent Road, Surrey, BC V4P 1J8
- 5) 기타 해외에서 모금된 선교비는 SEED Korea에 보고되어야 한다
- 6) USA와 Canada에서 모금된 후원금을 수령하는 선교사는 반드시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모금된 국가의 회기에 맞추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국세청의 의무사항이다.

4.3.3 SEED Canada (현재 공란)

4.4 선교비 지출 절차

- 4.4.1 선교지의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후원금 잔액을 초과하여 선교비를 지출할 수 없다.
- 4.4.2 선교후원금 모금이 책정된 기본후원금의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본부는 해당 회원을 귀국케 하여 후원금 모금에 전력하도록 하여 생활과 사역이 원활하도록 돕는다
- 4.4.3 사전에 지출 동의한 경조비와 선교사대회 적립금, 공동모금항목은 규정에 따라 공제하고 후원금 명세서에 명시된다.

4.5 기타 후원금 모금: 선교사 후보, 전문인/ 실버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 선교후원비 모금에 대한 절차

4.5.1 선교사 후보

- 1) 허입을 받는 즉시 선교후원금 관리를 시작한다.
- 2) ICMS 훈련 입소 전 후원금 사용은 반드시 단체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3) ICMS 훈련 입소 승인이 나면 등록비와 항공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 4) ICMS 훈련 수료와 동시에 선교사 기본생활비와 사역비(파송예상지방문)로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5) 이 경우 생활비는 본부의 인턴쉽으로 근무하거나, 6개월 이내에 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단체책임자의 승인 하에 지출된다.
- 6) 후보선교사가 파송되지 못할 경우 세법상 개인이 모금한 선교후원금이라 할지라도 국가본부에 속한 것이므로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

4.5.2 실버 선교사 (55-70세 첫 파송) 및 자비량 선교사

- 1) 생활비 명목으로 어떠한 선교후원금도 모금도 할 수 없다.
- 2) 사역비는 모금할 수 있으나 일반선교사의 재정관리 원칙과 규정을 따른다.

4.6 각국 본부의 책무: 선교후원금에 대한 책무

4.6.1 영수증 발급 및 Tax Deduction Receipt 발행

4.6.2 선교사 선교비 지출에 대한 자료들을 보관

4.7 송금 절차

4.7.1 SEED USA

- 1) 선교사는 매월 8일까지 사역비 보고를 하여야 한다.
- 2) 재정부에서는 매월 초에 선교비 입금 현황을 이메일로 통보하고, 사역비 보고에 따른 송금은 15일 전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4.7.2 SEED Korea

- 1) 지정된 계좌를 통해 매월 1-3일 송금하며 매월 선교비 명세서가 이메일로 통보한다.

4.7.3 SEED Canada

4.7.4 국외 송금 및 지정된 기간외에 송금 요청시에는 송금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4.8 사역비 보고 및 청구

4.8.1 사역비 보고 및 청구서 (양식)에 작성하여 이메일로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각 국가 재정부로 보고한다. 영수증 원본은 개인이 일정 기간을 보관하여야 하며, 본부에서 필요시 제출하여야 한다.

4.8.2 SEED USA 소속 선교사는 매월 8일까지 사역비 보고를 하여야 한다.

4.8.3 SEED Korea 소속 선교사는

- 1) 매월 ()까지 사역비 보고를 하여야 한다.
- 2) 연 2회(5월, 11월초) 재정보고 의무가 있다.
- 3) 회기 종합보고(11월)는 현지에서의 수입까지 포함시켜 연간재정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여 회원의 사역과 재정상황을 본부와 이사회가 파악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연말 재정보고서가 요구한 날짜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와 요청하는 파송교회에 보고할 수 없으므로 회원은 유념하여 성실히 보고 임해야 한다.

4.8.4 SEED Canada 소속 선교사는 매월 ()까지 사역비 보고를 하여야 한다.

4.8.5 모든 사역비와 프로젝트로 사용된 경비는 원본 영수증이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9 재정 감사

4.9.1 사역비와 프로젝트에 사용된 후원금은 보고와 함께 재정감사를 통하여 선교재정의 투명성을 통하여 유지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ECFA (Evangel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에 가입하고자 한다.

4.9.2 국제 본부와 각 국가 본부는 이사회 감사와 외부 감사를 받는다. 이때 해당 선교사들의 사역비와 프로젝트 후원금의 감사도 함께 받게 된다.

5. 사역 정책

5.1 본부 사역

- 5.1.1 Sending
- 5.1.2 Equipping
- 5.1.3 Evangelizing
- 5.1.4 Discipling

5.2 사역의 전략

- 5.2.1 SEED Blessing Network (SBN): 최우선종족선교로 미전도종족 선교를 향한 사역이다.
- 5.2.2 IBN: Moslem Ministries를 위한 사역이다.
- 5.2.3 ICMS: Imitating Christ Missionary School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 학교를 통하여 선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 5.2.4 SEED History and Archive: 전략 연구소로 선교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선교방향을 제시하는 사역이다.
- 5.2.5 SEED Wave: 차세대 선교사를 개발하는 사역이다.

5.3 사역의 종류

- 5.3.1 본부 사역/행정사역, 동원사역, 훈련 사역
- 5.3.2 신학교육
- 5.3.3 교회 개척
- 5.3.4 지도자 개발 사역
- 5.3.5 지역 개발 사역
- 5.3.6 의료 사역
- 5.3.7 문서 사역
- 5.3.8 교육 사역
- 5.3.9 대학생 및 청년 사역
- 5.3.10 어린이 사역
- 5.3.11 구제 사역, Homeless 사역, 난민 사역
- 5.3.12 창의적 접근 지역 사역(SBN)
- 5.3.13 비즈니스 사역
- 5.3.14 교사 사역
- 5.3.15 MK 사역
- 5.3.16 종족사역
- 5.3.17 한인디아스포라 사역

5.3.18 Multiethnic Ministry

5.3.19 북방사역

5.3.20 정보, 인터넷 및 영상사역

5.3.21 전문인 평신도 사역

5.3.22 가정 사역

5.3.23 방송사역

5.3.24 선교사 케어 사역

5.3.25 출판사역

5.4 사역의 평가: 사역 평가는 선교사는 절차에 따라 매년 사업 보고서와 다음 년도 사역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지역장과 국가 본부 대표는 평가서를 작성하여 국제사역위원회와 해당 이사회에 제출한다.

5.5 사역의 이양과 철수

5.5.1 선교사에게 이양: 은퇴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선교사의 사역을 다른 선교사에게 이양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지역장과 협의를 하여 국가본부대표와 사무총장에게 보고를 하며, 국제사역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진행한다. 필요시 해당이사회에 제출한다.

5.5.2 현지 사역자에게 이양: 사역을 현지 사역자에게 이양할 시에도 5.1 과 같은 과정을 통한다.

5.5.3 영구적 철수: 현지 사정에 의하여 영구적 철수경우에는 현지 사역자들이 계승하여 사역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한다.

5.5.4 일시적 철수: 당사자 선교사가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재입국이 불가할 시에는 본회 다른 선교사에게 이양하여 이 사역을 계속 계승할 수 있도록 한다.

5.6 현지 재산관리

5.6.1 차량과 장비와 부동산 재산권 행사는 아래와 같다.

5.6.2 선교지에서 선교비로 구입한 모든 재산 또는 자산은 사역이 종료된 후라도 필드 팀에서 관리한다. 해당 선교사나 다른 선교사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5.6.3 현지에서 구입한 부동산은 사역이 종료되었을 시 현지사역자 혹은 현지 법인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7 사역의 전략적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타 선교단체와 파트너십을 가져 효과적으로 (핵심적, 일시적) 사역을 공유한다.

5.8 교회

5.8.1 본국 교회: 후원교회와 동역 교회로 선교사와 본부의 기도편지로 선교보고를 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는 선교 공동체

5.8.2 현지 교회

6. 복지 정책

6.1 의료 보험

6.2 은퇴 연금

6.3 생명 보험

6.4 긴급 구호기금

- 6.4.1 선교지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금을 국제본부에서 운용한다.
- 6.4.2 위기상황은 신속한 치료가 요하는 질병, 사고, 사망, 긴급대피 등 위기관리가 필요할 경우를 말하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현장에 필요한 재정을 본부가 선지출 할 수 있다.
- 6.4.3 긴급 구호비는 지역장의 동의를 받아 국가 대표에게 신청한다. 국가 대표는 국제본부 사무총장과 상의하여 긴급 구호기금에서 지출을 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 6.4.4 긴급재정 한도액은 US \$ ()이며 금액 결정은 사안에 따라 본부가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 6.4.5 신청자는 조속한 상환을 위해 신청 시 본부 재정담당이 제시하는 상환계획에 동의해야 한다.
- 6.4.6 필요한 경우 회원의 위기관리를 위해 본부는 모금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6.5 국제 상호기금

- 6.5.1 각 국가 선교회는 국제본부(국제사역위원회의 결정)의 제안에 따라 각국 이사회가 결의하여 다음의 목적을 두고 국제상호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 6.5.2 국제상호기금은
 - 1) 사역개발을 위한 긴급 지원
 - 2) 지역 공동 프로젝트
 - 3) 국제사역 개발 등
- 6.5.3 위의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대여한 후에 상환계획에 따라 원금을 상환한다.
- 6.5.4 대여 절차는 지역장의 추천으로 국가대표와 사무총장이 협의하여 국제대표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6.6 선교사의 자녀 장학기금

- 6.6.1 국제본부에 선교사 장학기금을 운용한다.
- 6.6.2 SEED 소속 선교사의 자녀 중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풀타임 학생에게 지급된다..
- 6.6.3 신청은 매년 9월 중에 국제본부의 안내 공고문에 따라 신청한다.
- 6.6.4 국제본부 선교사 자녀장학금 펀드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액수는 증감될 수 있다.

6.7 Guest House

6.8 안식년숙소

6.9 선교사 은퇴 마을 (Missionary Village)

7. 서약서

선교사 이름:

본인은 SEED Missionary Manual을 자세히 읽고 SEED Missionary Manual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사역하는 동안 이것을 따르며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선교사 서명:

국가 대표 서명: